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 계			4,988,491,110	4,633,052,793	355,438,317
일 반 회 계			4,334,375,778	3,965,218,014	369,157,764
특 별 회 계			654,115,332	667,834,779	△13,719,447
	기 타 특 별 회 계		418,780,332	432,499,779	△13,719,447
		농어촌주택사업	11,485,810	16,205,810	△4,720,000
		의 료 급 여 기 금	377,269,022	386,268,469	△8,999,447
		동부권특별회계	30,025,500	30,025,500	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	235,335,000	235,335,000	
		지 역 개 발 기 금	235,335,000	235,335,000	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 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 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 없음"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,188,50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,675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